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민원업무 및 현안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령해양수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수산물 가공시설 위생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불법 조업감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항만순찰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산물 안전 관련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에서 8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

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6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9항제4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4호 중 “감용기”를 “감용기(減容機: 펠스티로폼 따위를 압축하여 자재로 재활용하는 기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3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7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7호 중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관련 법령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법·제도 운영”을 “법령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대한염업조합의 관리·감독”을 “염업조합 관련 법령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17항제12호 중 “협력”을 “협력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운영 지원”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도의 운영”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제도의 운영”을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8호(종전의 제2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16. 수산물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19.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23. 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제도의 운영

24.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26. 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 보전·개선

27.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제8조제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7호 중 “해상교통인프라”를 “해상교통 기반시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를 “운영지원과·수산물안전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로, “기술서기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

검사과장”을 “수산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물 식품안전사고 대응
2.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운영 및 수산물 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
4.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5. 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
6.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7.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업무
8.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1. 수출수산물 검사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2.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13.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
14.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업무

16. 수산물 원산지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17. 수출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수출상대국 위생안전정보의 수집·관리
 18. 수출수산물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
 1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한 업무
 20. 소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21. 소금산업의 안전·품질관리 제도에 관한 업무
 22. 소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3. 염전 생산시설 개선 및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업무
 24. 염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5. 수산물 안전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 업무 총괄
-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사 업무의 총괄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험 분석·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무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
 5. 수출국 현지실사 및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무
 6. 검역·검사 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
 7.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출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9. 검역·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10.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급 및 국제수산물기구 관할 수역·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증명에 관한 업무

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

13. 수산물선상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

14.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

제12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5호 중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우수 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회계·결산에 관한 업무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복무관리,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5. 수출입 검역에 관한 업무

6.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 업무

7. 수출수산물 검사 및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

8.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9.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0.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사후관리
11. 지리적표시 및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운영
13.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14. 소금의 품질검사
15.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6.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업무
- 1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 18.. 그 밖의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제7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42조제9항 후단 중 “5명”을 “4명”로 한다.

제46조제9항의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과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둔다.
- ⑬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둔다.

별표 5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포천군·양주군”를 각각 “포천시·양주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7”을 “589”로 하고, 일반직 계 “593”을 “58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2”를 “51”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7”을 “194”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7”을 “204”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0”을 “5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58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을 “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5”를 “202”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1”을 “198”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292”를 “3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0”을 각각 “30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및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을 각각 “4”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9”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3”을 “77”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5”를 “78”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1”을 “53”으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292”를 “3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0”을 각각 “30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및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을 각각 “4”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9”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3”을 “77”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5”를 “78”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1”을 “53”으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69”를 각각 “872”로 하고, 행정주사·시

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68”로 하며,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1”을 “234”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1”을 각각 “874”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68”로 하며,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3”을 “236”으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1,269”를 “1,2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67”을 각각 “1,268”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2”를 “41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1”을 “11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271”를 “1,272”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69”을 각각 “1,270”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

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3”을 “414”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1”을 “11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1 제6호의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하고, 제8호 다음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규정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체하는 정원 8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에 대한 사항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에 두는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에 대한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7]

해양수산출장소의 소속·명칭 및 위치(제25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해양수산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 사천해양 수산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 삼척해양 수산출장소	강원도 삼척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별표 29]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3 관련)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15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9. 제46조제1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

10. 제46조제1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소관이 명확하지 <u>아니한</u> 업무의 담당 실·국 지정	16. ----- <u>않은</u> ----- -----
17.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다른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u>아니하는</u> 업무	17. ----- ----- <u>않는</u> -----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⑧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3. 삭제	
4. 해양과학기술 연구 <u>인프라</u> 의 구축	4. ----- <u>기반시설</u> ----- --
5. ~ 15. (생략)	5. ~ 15.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13. (생략) 14. 방치선박 정리, 페스티로폼 <u>감용기</u> 보급에 관한 업무 15. ~ 18. (생략) ⑮ (생략) <16>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략) 31. 그 밖에 국제협력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u>아니하는</u> 업무 ⑰・⑱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의2. (생략) 18. 그 밖에 수산정책관 소관사 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u>아니하는</u> 업무 ⑧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 <u>감용기(減容機: 페스티로폼 따 위를 압축하여 자재로 재활용 하는 기계를 말한다)</u> ----- -- 15. ~ 18.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 -----. 1. ~ 30. (현행과 같음) 31. ----- ----- ----- <u>않는</u> ----- ⑰・⑱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 -----. 1. ~ 17의2. (현행과 같음) 18. ----- ----- -- <u>않는</u> ----- ⑧----- -----. 1. ~ 6. (현행과 같음)
--	---

7. 수산물 원산지 표시 <u>법률 및</u> <u>제도에 관한 업무</u>	7. ----- <u>관련 법령</u> <u>총괄 · 조정</u>
8. 수산물 원산지 표시 <u>중장기</u> <u>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u>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소금산업 관련 <u>법 · 제도 운</u> <u>영에 관한 업무</u>	10. ----- <u>법령 총괄 · 조</u> <u>정</u> -----
11. 소금산업 발전 <u>중장기 계획</u> <u>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삭 제>
12. 소금 전문인력 양성 및 소금 <u>관련 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u> <u>업무</u>	<삭 제>
13. <u>대한염업조합의 관리 · 감독</u> <u>에 관한 업무</u>	13. <u>염업조합 관련 법령 총괄 ·</u> <u>조정</u> -----
14. 소금이력관리제에 <u>관한 업</u> <u>무</u>	<삭 제>
15. 염전생산시설 개선에 <u>관한</u> <u>업무</u>	<삭 제>
16. 소금 품질관리에 <u>관한 업무</u>	<삭 제>
17. 소금산업 육성에 <u>관한 업무</u>	<삭 제>
18. ~ 24. (생 략)	18. ~ 24.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어업자원정책관의	18. -----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u>아니하는</u> 업무 ⑭ ~ ⑯ (생 략) <17>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의2. (생 략) 12.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u>협력</u> 13. <u>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 무</u> 14. <u>수출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수출상대국 위생안전정보 의 수집 · 관리</u> 15. <u>수출수산물 부적합품에 대 한 원인규명 및 조사</u> 16. <u>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 제도에 관한 업 무</u> 17. (생 략) 17의2. <u>수산물의 생산 ·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안전 인식 제 고를 위한 교육 · 홍보 · 지도 및 감독</u> 17의3. <u>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의 운영</u> 17의4. <u>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u>	----- ----- <u>않는</u> ----- ----- ⑭ ~ ⑯ (현행과 같음)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 <u>협력 총괄 · 조정</u> <삭 제> <삭 제> <삭 제> 16. <u>수산물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 규격에 관한 업무 총괄 · 조정</u>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

<u>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u>	
18.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운영 지원</u>	18. ----- <u>관리·감독</u>
19. <u>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업무</u>	19. <u>수산생물질병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u>
20. <u>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용 및 관리</u>	20. ----- <u><삭 제></u>
21. <u>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u>	21. ----- <u>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u>
22. <u>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의 운영</u>	22. ----- <u>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u>
23. <u>수출수산물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u>	23. <u>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제도의 운영</u>
24. <u>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조사</u>	24. <u>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u>
25. <u>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관한 업무</u>	25. <u>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u> ----- --
<u><신 설></u>	
<u><신 설></u>	26. <u>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 보전·개선</u>
	27. <u>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u>
26. <u>그 밖에 어촌양식정책관 소</u>	28. -----

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u>아니하는</u> 업무	----- ---- <u>않는</u> ----- -----
<18>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친환경양식 김 활성화처리제</u>	<u><삭 제></u>
<u>관련 법·제도의 운영</u>	
19. ~ 22의2. (생 략)	19. ~ 22의2. (현행과 같음)
23. <u>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u>	<u><삭 제></u>
24. <u>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u><삭 제></u>
25. <u>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 보전·개선</u>	<u><삭 제></u>
26.·27. 삭 제	
28. <u>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u>	<u><삭 제></u>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①⑨ (생 략)	①⑨ (현행과 같음)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③ (생 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안해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해상교통인프라</u>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7. <u>해상교통 기반시설</u> ----- -----
8. ~ 25. (생 략)	8. ~ 2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생 략)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
영지원과 · 검역검사과 · 품질관
리과 및 수산방역과를 두되, 운
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검역
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
산방역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
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
사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
협 분석 · 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
무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
지원과 · 수산물안전과 · 검역검
사과 · 품질관리-----

-----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물안전과장-----

-----.

③ -----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않는 -----

④ 수산물안전과장-----
-----.

1. 수산물 식품안전사고 대응

2.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조사
에 관한 업무

3.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 제도 운영 및 수
산물 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

<u>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u> <u>5. 수출국가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무</u> <u>6. 검역·검사 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u> <u>7. 검역시행장·검역장소 지정·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u> <u>8. 수출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u> <u>9. 검역·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u> <u>10.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u> <u>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급 및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증명에 관한 업무</u> <u>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u> <u><신 설></u> <u><신 설></u>	<u>4.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u> <u>5. 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u> <u>6.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u> <u>7.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업무</u> <u>8.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u>9.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u> <u>10.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u> <u>11. 수출수산물 검사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u> <u>12.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u> <u>13.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u> <u>14.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관한</u>
---	--

<u><신 설></u>	<u>업무</u>
<u><신 설></u>	<u>1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16. 수산물 원산지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17. 수출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수출상대국 위생안전정보의 수집·관리</u>
<u><신 설></u>	<u>18. 수출수산물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u>
<u><신 설></u>	<u>1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0. 소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1. 소금산업의 안전·품질관리 제도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2. 소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3. 염전 생산시설 개선 및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4. 염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25. 수산물 안전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 업무 총괄</u>
<u><신 설></u>	<u>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u>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
사 업무의 총괄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
험 분석·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
무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

5. 수출국 현지실사 및 검역증
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
무

6. 검역·검사 기준 설정에 관
한 업무

7.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출수산물 생산·가공 시설
의 등록 및 관리

9. 검역·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10.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
급 및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
역·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6. ~ 14. (생략)

<신설>

⑥ (생략)

제14조(지원) (생략)

<신설>

증명에 관한 업무

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

13. 수산물선상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

14. 해양·수산업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 이력수입수산물의 등록·신고

6. ~ 14. (현행과 같음)

15. 우수 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4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회계·결산에 관한 업무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복무관리, 비상대비 및 재난 관리

5. 수출입 검역에 관한 업무
6.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 업무
7. 수출수산물 검사 및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
8.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9.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0.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사후관리
11. 지리적표시 및 우수수산물품등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운영
13.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14. 소금의 품질검사
15.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6.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업무
- 1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제18조(어업관리단) ①·② (생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 ⑦ (생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18.. 그 밖의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어업관리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않는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2명-----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4명-----

_____.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 ⑪ (현행
과 같음)

⑫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
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
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안전심
판원에 둔다.

⑬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2월 21일까지 별표 31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
에 둔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597</u>		<u>589</u>	-8
일반직 계	.		.		.	
	.		.		.	
	.		<u>593</u>		<u>585</u>	-8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	
	.		.		.	
	.		<u>197</u>		<u>194</u>	-3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207</u>	. <u>204</u>	-3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31</u>	. <u>30</u>	-1
.	.	.	
.	.	.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00</u>	• <u>593</u>	-7
일반직 계	• • <u>596</u>	• • <u>589</u>	-7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51</u>	<u>50</u>	-1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05</u>	<u>202</u>	-3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소 • •	• <u>201</u> • •	• <u>198</u> • •	-3
--	--	--	-----------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92</u>	<u>307</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90</u>	<u>305</u>	+15
일반직 계	<u>290</u>	<u>305</u>	+15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u>	<u>4</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3</u>	<u>4</u>	+1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5</u>	<u>29</u>	+4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u>73</u>	<u>77</u>	+4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5</u>	<u>78</u>	+3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 서기 · 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1</u>	<u>53</u>	+2
·	·	·	
·	·	·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92</u>	<u>307</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90</u>	<u>305</u>	+15
일반직 계	<u>290</u>	<u>305</u>	+15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u>	<u>4</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3</u>	<u>4</u>	+1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5</u>	<u>29</u>	+4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u>73</u>	<u>77</u>	+4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5</u>	<u>78</u>	+3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 서기 · 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1</u>	<u>53</u>	+2
·	·	·	
·	·	·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69	872	+3
일반직 계	869	872	+3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	168	+1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 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231	234	+3
·	·	·	
·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1	-1
·	·	·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71	874	+3
일반직 계	871	874	+3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	168	+1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 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233	236	+3
·	·	·	
·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1	-1
·	·	·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69</u>	<u>1,270</u>	+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67</u>	<u>1,268</u>	+1
일반직 계	<u>1,267</u>	<u>1,268</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2</u>	<u>413</u>	+1
·	·	·	
·	·	·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운전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11</u>	<u>112</u>	+1
·	·	·	

• 사무운영서기보 • •	• <u>12</u> • •	• <u>11</u> • •	-1
---	---	---	-----------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71</u>	<u>1,272</u>	+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69</u>	<u>1,270</u>	+1
일반직 계	<u>1,269</u>	<u>1,270</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3</u>	<u>414</u>	+1
·	·	·	
·	·	·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운전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11</u>	<u>112</u>	+1
·	·	·	

• 사무운영서기보 • •	• <u>12</u> • •	• <u>11</u> • •	-1
---	---	---	---------------